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unghope2@korea.kr

2) 주소 : 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

3) 팩스 : 044-202-3947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5) 통합입법예고센터 :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(전화 : 044-202-301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(<http://www.lawmaking.go.kr>) “통합입법예고”와 보건복지부 (<http://www.mohw.go.kr>) “정보→법령→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환경부공고제2020-847호

관보제19847호(2020. 9. 29)에 게재된 “환경부공고제2020-824호(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)”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● 환경부공고제2020-848호

「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」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「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·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(2021년 1월 16일 시행)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물질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